

예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. 5. 10.

예 천 군 의 회 의 장

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확립하고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공무원 범위 변경 (안 제2조제2호, 제4호)

- 실·과·팀장 → 실·과장

나. 관계공무원 범위 신설 (안 제2조제5호)

○ 읍·면장

3. 개정조례안

○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, 제113조 ~ 제117조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마. 조례안 예고 결과 :

바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사.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(☎054- 650- 6593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murayzzang@korea.kr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의회의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의회의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실·과·팀장급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
중 “실·과·팀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
같이 신설한다.

5. 읍·면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·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 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군수의 보조기관 중 <u>실 · 과</u> <u>· 팀장급</u>	2. ----- <u>실 · 과</u> <u>장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<u>실 · 과 · 팀장</u> 과 동 일직급 이상인 자	4. ----- ----- <u>실 · 과장</u>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5. <u>읍 · 면장</u>

참 고

관계법령

【지방자치법】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3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6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7조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면·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·행정동을 말한다.